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다3772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1750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자 2019재나156 결정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다3772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13 선고 2011나4874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28 선고 2011가소155378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윤기원, 신용락, 오정익

피고, 피상고인A

판결 선고 2014. 8. 26.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13. 선고 2011나4874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N

이 유

1. 국가는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같은 조 제4항, 제5항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런데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이다. 또한 변상금은 부당이득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나 사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부당이득금과 액수가 다르고, 이와 같이 할증된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목적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의 환수를 넘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다. 그리고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였지만 변상금 부과처분은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징수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는 중앙관서의 장 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되, 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은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현행 등기제도 아래에서 불가피하게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된 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고려 아래 마련된 것일 뿐, 국가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망 C은 1964. 6. 15.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상 소유자였던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와 서울 성북구 E 임야를 3,355원에 매수하고 1964. 7. 25.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대한민국은 D 명의의 등기가 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C 등을 상대로 65가8429, 67가883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C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1972. 4. 11. 확정된 사실(대한민국은 1973. 8. 30.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도 망 C은 이 사건 임야를 계속하여 점유 사용하여 오다가 1991. 9. 6. 사망하였고, 피고가 C을 상속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D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망 C과 그 상속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가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되기 전까지는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변상금 부과·징수를 할 수 없을지라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 국가에게 있음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판명된 1972. 4. 11. 이후부터는(망 C은 이때부터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가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국유재산법상의 변상금징수권과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 결국 위 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민사상 부당이득의 반환 또한 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신